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식품안전관리체계 확충

*Strengthening of Food Safety Management for the
Health of People*



정기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명박 정부 출범에 따라 100대 국정과제가 추진, 완료, 진행되고 있고 식품안전과 관련한 과제도 20여개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그 중 기 완료된 과제도 있고 현재 추진중인 과제도 있다. 식품위해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리 대상 품목이 1,638개에서 1,882개로 '12년까지 확대될 예정이고, 유통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통식품의 95%를 HACCP을 적용해서 생산하고자 있다. HACCP 적용확대는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식품이물 혼입을 저감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조치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의 확충이 함께 고려되어야만 내실있는 안전관리 강화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식품안전지표 구성 및 관리는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한눈에 파악하고, 연도별로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 낼 수 있게 해주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단, 안전지표 구성 후 지표 사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표값에 대한 평가보고서 발간과 안전지표의 시의성을 유지하기 위한 주기적인 관리 등 추가 사업이 필요하다.

1. 들어가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안전(Safety)이 국정기조의 화두이고 5대 안전분야에는 식품안전이 포함되어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식약청) 등으로 분산되어있는 식품안전관리업무를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 산하에 식품안전정책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HACCP 적용에 의해 생산된 제품 비율을 2012년에는 총 유통제품의 95%로 높이고, 국민 참관인 제도를 도입

확대하는 등 식품안전관리 수준의 제고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¹⁾.

하지만 식품안전을 둘러싸고 있는 내외부 환경의 변화는 만만치 않다.

1995년 WTO 출범 이후 국제교역의 자유화, 개방화에 의하여 식품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식품위해물질의 국내 유입이 또한 증가되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리스테리아(Listeria), 노로바이러스(노르워크 바이러스, Norwalk Virus, Norovirus) 등 저온성, 병원성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다발하고 있으며 식

1) 대한민국정부,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2008.

식품안전관리체계는 여전히 다원화로 신속성,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금세기 최대의 외부 환경적 변화인 기후 변화에 의한 지구온난화는 식중독 다발의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2007년 대비 2020년에는 약 6%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치가 연구 결과로 제시된 바 있다²⁾.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08년도 기준으로 40%로써 일본의 53%, 미국의 81%, 영국의 65%('05)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현 정부는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선진국 수준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여러 국정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있다³⁾.

- HACCP 적용 식품생산량 확대: 30%('08년) → 95%('12년)
- 관리대상 유해물질 기준 강화: 1,638개('08년) → 1,882개('12년)
- 위해식품 회수율 제고: 10.1%('08년) → 30.0%('12년)
- 식중독 환자수 감축: 인구십만명 당 20.1명('08년) → 10.0명('12년)

하지만 이런 여러 식품안전관리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제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안전관리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즉, 지자체별 식품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파악과 존재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또한 증가하는 식품위해물질에 대한 적정한

관리와 식품이물혼입을 저감화하기 위한 HACCP 적용 확대 등이 고에서는 향후 이명박 정부에서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식품안전관리 제도 강화와 지자체의 식품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2.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1) 식품이물 관리를 위한 HACCP 활용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식품제조공정상의 HACCP 적용은 1995년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1996년부터 실시되어 해마다 적용업체수와 품목수가 증가하고 있어, 2012년까지 전 식품 생산량의 95%, 인증대상 업체를 4천여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7개 품목(어육가공품 중 어육류,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김치류 중 배추김치)에만 의무적용하고 있고 그 외 품목은 권장사항이다.

식약청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08.08.14) 별표 1. 선행요건(제5조 관련) 17. 원료입고에서부터 제조·가공, 보관, 운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혼입될 수 있는

2) 정기혜,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이슈앤포커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3)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식품안전종합대책, 2008.

이물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설치 의무한 바 있다.

특히 최근에 다발하고 있는 식품이물의 관리는 HACCP 적용과정에서 할 수 있으며 캐나다, 호주 등도 HACCP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부가 인증한 식품안전 업체에서도 이물발견사고가 발생하나, 곰팡이, 벌레, 금속, 플라스틱, 비닐 등의 제어에는 HACCP 적용이 효과적임이 이물신고자료 분석에 의해 입증되고 있고 물론 업체의 식품안전시스템 강화에 효과적인 제도이다⁴⁾.

식품이물혼입은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원료단계, 제조공정단계, 유통단계, 그리고 소비단계를 총망라하여야 하는데 가장 이물혼입률이 높은 단계인 제조공정단계가 HACCP에 의해 관리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HACCP 적용에도 한계가 있는데 가공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원료생산 단

계에서부터의 위해요소 안전관리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식약청, 농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또한 HACCP을 도입하고 적용하는데 소규모 및 영세업체들은 대·중규모 업체들에 비해 경제력과 인적자원에서 뒤떨어지는 상황임으로 X-Ray투시기, 영상검출기 등 새로운 기기설치 시 재정지원 등 적합한 맞춤형 지도가 필요하다⁵⁾.

(2) 향후 추진과제

가) 식품원료에서 기인하는 위해요소의 원천적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부처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보건복지부(식약청), 농수산식품부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식품안전관리체계상 단기간에 추진, 개선하기는 어려운 과제라 할 수 있다.

표 1. 안전식품 제조업소 인증제의 의무적용여부에 따른 이물별 신고 현황

(단위: 건, %)

구분	합계	벌레	곰팡이	금속	플라스틱	비닐	유리	기타
합계	374 (100.0%)	63 (16.8%)	25 (6.7%)	21 (5.6%)	18 (4.8%)	24 (6.4%)	3 (0.8%)	220 (58.8%)
적용	24 (100.0%)	5 (20.8%)	0 (0.0%)	3 (12.5%)	3 (12.5%)	1 (4.2%)	0 (0.0%)	12 (50.0%)
미적용	350 (100.0%)	58 (16.6%)	25 (7.1%)	18 (5.1%)	15 (4.3%)	23 (6.6%)	3 (0.9%)	208 (59.4%)

주: 8종 의무적용 품목[어묵류, 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 냉동수산식품(조미가공품),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김치류 중 배추김치(단, 단계별 적용)]
 자료: 2008~2009년 5월까지의 식품의약품안전청 신고자료 기준

4) 정기혜 등, 식품이물 혼입 방지를 위한 현장 매뉴얼 개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5) 정기혜 등, 식품이물 혼입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나) HACCP의 적용 확대와 함께 소규모 및 영세 인증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및 규제 준수도 조사를 통한 문제점 도출과 해결을 위한 지도를 강화하는 정책수립 및 집행이 필요하다.

2) 식품위해물질 관리 강화 및 인프라 확충

(1) 현황 및 문제점

식품종합대책 발표(08.07)에 따라 식품유해 물질의 관리항목 수를 확대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약, 항생제,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강화하고('08년 1,638개→ '09년 1,760개→ '10년 1,882개), 김치, 고춧가루 등 국민 다소비 식품 500품목('08년 100품목, '09년 100품목, '10년 300품목)으로 확대 선정해 집중 검사할 방침이다.

또한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유해물질의 신설과 더불어 안전기준을 개정하기도 하였다.

<표 3>과 같이 기존 안전기준의 재검토를 통한 위해성이 우려 또는 입증된 항목에 대한 기

표 2. 신설 안전기준 예

식약청 고시(고시일)	신설 내용
제2010-33호(2010.05.18)	- 과산화벤조일 등 257개 품목의 납, 카드뮴, 수은 등 규격 - 구연산칼슘 등 41개 품목의 이소프로필알콜 등 잔류용매,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 규격 - 유전자재조합식품첨가물의 제조기준 신설 - 메주 및 고춧가루에 대한 오크라톡신 A 기준 신설
제2010-25호(2010.04.30)	- 농산물(당근, 마늘, 부추) 및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고기)에 대한 납 및 카드뮴 기준 - 옥수수함유식품에 대한 푸모니신 기준
제2009-51호(2009.07.10)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	- 카라기난의 순도시험 중 잔류용매, 세균수, 대장균, 살모넬라 규격 신설
제2009-24호(2009.05.07)	- 식품 중 멜라민 기준 및 시험법 - 옥수수 중 푸모니신 및 밀, 호밀, 보리 및 커피에 대한 오크라톡신 A 등 곰팡이독소 기준 및 시험법 - 벤조피렌 기준
제2008-81호(2008.12.23)	- 용출규격 강화 및 폴리아미드/나일론재질에 대한 4,4'-메틸렌디아닐린 용출규격
제2008-70호(2008.11.07)	- 과자류(과자, 캔디류) 및 초콜릿류 세균수 기준 신설[제5.1 및 제5.3] - 싸이플루쓰린 등 13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추가[별표 4 및 별표 5]
제2008-15호(2008.03.24)	- 즉석섭취 · 편의식품류의 황색포도상구균 정량기준 신설

준 강화 또는 지정 취소가 수행되었고 일본 등에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곰팡이독소 (mycotoxin) 등에 대한 최신 시험법 적용을 위한 개정이 수행된 바 있다⁶⁾.

이런 노력에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안전 기준 강화에 따른 인프라 확충과 기준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안전기준 강화는 관리항목수의 확대와 안전 기준 수준의 강화로 구분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관리되고 있는 유해물질 항목수는 미국 1,054개, 대만 1,249개 등과 비교해 적지않은 실정이다.

(2) 향후 추진과제

가) 식품위해항목수 증가에 따른 관리인프라 확충 방안이 단, 중장기적 단계별로 계획, 추진되어야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나) 식품위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와 더불어 단기적 및 필요에 따라서는 중장기적인 관리 실태조사를 통하여 실효성 및 유효성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하며, 신설 및 개정된 기준규격의 효율성에 대한 지속적인 재검토가 수행되어야 한다.

표 3. 개정 안전기준 예

식약청 고시(고시일)	신설 내용
제2009-1호(2010.01.0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	- 화학적합성품 중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파라옥시안식향산이소프로필, 파라옥시안식향산이소부틸 3품목 지정 취소
제2009-168호(2009.11.19)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	- 화학적합성품 중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 1품목 지정 취소
제2009-51호(2009.07.10)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	- 천연첨가물 중 콘색소, 누리장나무색소, 땅콩색소 3품목 지정 취소 - 스테비오사이드를 스테비올배당체로 명칭 변경, 순도시험 중 잔류용매 등 규격 신설 및 비소, 납 규격 강화 - 펙티나아제의 정의 개정 및 순도시험 중 납, 대장균 규격 강화
제2008-81호(2008.12.23)	- 곰팡이독소 기준 및 시험법 개정 - 농약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제2008-81호(2008.12.23)	- 비스페놀 A 규격 강화 - 유리제, 도자기제 등에 대해 납, 카드뮴 규격을 강화
제2008-70호(2008.11.07)	- 수족관물의 관리기준 개정[제8. 2. 2-2. 1]
제2008-62호(2008.08.27)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	- 「천연첨가물」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7품목」을 공정 규격화 하고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의약품의 위해물질 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청와대 국정과제 보고자료, 2009. 7.

3. 지자체의 식품안전관리 업무 실적 평가 및 지원

1) 현황 및 문제점

1995년 지자체가 출범한 이래 식품안전관리 업무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거의 99.9% 이상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되어 오 늘에 이르고 있다.

이런 현황에 의해 국민이 느끼는 식품안전에 관한 만족감, 신뢰도 등은 사실상 지방정부의 업무 집행 능력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지방정부의 식품안전업무의 집행 역량강화가 우리나라 식품안전수준을 좌우하게 되므로 지방정부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

여러 방법중의 하나가 업무실적 평가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디스인센티브 지급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각 지자체의 업무추진 실적 평가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가 통합적으로 총 9개 분야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총 평가분야 / 시책은 9개 분야 / 74개 시책 (20개 부처), 218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한 시책당 평가지표가 평균 2.94개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보건위생분야에 속해있는 식품안전지표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4개의 지표가 구성되어 총 100점 만점에 25.64점을 차지하고 2008년부터 통합평가, 관리되고 있다.

표 4.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지방정부로 이관된 주요 업무현황

연도	이관 업무	담당 부처	
		당초	이관
1996년	- 식품의 영업허가권	보건복지부	시·군·구
1998년	- 식품업소 신고·허가업무	보건복지부	시·군·구
	- 식품업소의 위생감시 및 시설조사	보건복지부	시·군·구
	- 식품첨가물 제조업	보건복지부	식약청
	- 식품보존업(식품조사처리업)		
	- 식품소분·판매업	시·도	시·군·구
1999년	- 식품접객업 중(단란 및 유흥주점업)	보건복지부	시·군·구
2002년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식약청	
	-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시·군·구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시·군·구	
2003년	- 식품 등 수입 판매업	식약청	지방식약청
2005년	- 식품접객업 중 제과점영업의 신고 업무	보건복지부	시·군·구

주: 2002년 신설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2008.

표 5.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총괄표

(단위: 개)

구분	시책수	지표구성별				
		계	계획지표	집행지표	산출/결과지표	결과활용
합계	74	218	2	103	107	6
일반행정	10	25	1	13	10	1
사회복지	9	36	-	16	17	3
보건위생	6	27	-	5	22	-
- 가족방역추진	(1)	(4)	-	(4)	-	-
- 지자체 보건관리	(1)	(9)	-	-	(9)	-
- 전염병 관리	(1)	(5)	-	-	(5)	-
- 식품안전 관리	(1)	(4)	-	(1)	(3)	-
- 한약재 유통관리	(1)	(1)	-	-	(1)	-
- 한의약공공보건사업	(1)	(4)	-	-	(4)	-
환경산림	7	23	-	9	14	-
지역경제	11	33	1	10	22	-
지역개발	11	25	-	19	6	-
문화관광	5	10	-	8	2	-
안전관리	9	21	-	17	4	-
중점과제	6	18	-	6	10	2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세부계획, 2010(재구성)

표 6. 2010년 행안부 지자체 통합평가 식품안전지표

3-4 식품안전관리 (25.64)	계획		
	집행	3-4-1 식중독 예방관리에산 집행액	3.92
	산출 / 결과	3-4-2 식품안전관리 실적 전산입력률	5.45
		3-4-3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	9.68
		3-4-4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6.59
결과활용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세부계획, 2010

행정안전부는 해마다 명년도에 평가의 필요성이 있는 분야 및 시책을 결정하고 각 시책별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를 각 부처에서 제출받아

전문가 검토 회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으나 통합 평가에 따라 지표수가 제한적이라 식품안전분야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여건 하에서 식약청은 식품 안전분야별로 개별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개별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분야는 식중독, 식품감시, 식품검사 기관, 어린이 먹거리이다.

식중독 분야의 평가지표는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8>에는 식약청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식품감시업무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가 제시되어 있다.

총 81개 정부지정 식품위생검사 기관에 대해 10개 평가항목은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0>에는 「어린이식생활안전 관리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자체의 어린이 먹거리 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가 제시되어 있다⁷⁾.

이처럼 행정안전부와 식약청 등에 의해 식품안전업무 추진실적이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국정지표인 식품안전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대표 안전지표를 구성하고자 식약청, 통계청 등이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지표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정과제 추진 일정상 2012년까지 구성하도록 되어있어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 생산, 비교가 가능한 인구 10만명당 식중독 발생 환자수를 현재까지 대표 안전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7. 식중독 업무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안전지표

구분	평가지표	비중
사고발생 (50%)	① 인구 대비 식중독 환자수	30%
	② 업소 수 대비 식중독 발생건수	20%
사전예방 (50%)	③ 식중독 발생 신속 보고 비율	20%
	④ 식중독 원인물질 검출률	10%
	⑤ 업소 수 대비 식품위생 지도·점검 실시율(비율)	10%
	⑥ 식중독예방진단서비스 참여율	10%

자료: 식약청 내부자료, 2010.

표 8. 지자체 식품감시업무 평가를 위한 안전지표

(단위: 점)

평가지표	비중	비고
관할업체 대비 점검률	20%	기본점수 10, 가산점수 10
점검업체 대비 적발률	20%	기본점수 10, 가산점수 10
합동단속 참여율	30%	관할 시·군·구 참여율 10 총 단속일수 20
수거·검사 건수	10%	가산점수 10
수거·검사 부적합률	20%	기본점수 10, 가산점수 10

자료: 식약청 내부자료, 2010.

표 9. 식품위생검사기관 평가를 위한 안전지표

평가분야	평가항목	대상기관
총 6분야	10개 항목	81개소
미량영양성분	분유중 비타민 A	61개소
식품미생물	식중독균, 대장균군	67개소
잔류 및 오염물질	카드뮴, 주석, 다이옥신	65개소
식품첨가물	소르빈산, 타르색소	64개소
건강기능식품	글루코사민	40개소
GMO 식품	유전자재조합 성분	23개소

자료: 식약청 내부자료, 2010.

7) 2008년 3월 21일 제정, 2009년 3월 22일 시행

표 10. 어린이 먹거리 사업 평가를 위한 안전지표

정책지표	대표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가중치
어린이 식생활 안전 (0.4)	우수판매업소와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수준	1.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및 재정 지원을	0.05
		2.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관리율	0.07
	위해식품 수거·감시수준	3.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률	0.06
		4. 식품보호구역 지정학교수 대비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비율	0.03
	식품위생법 준수수준	5. 어린이 급식시설 식품위생법 위반율	0.08
	어린이 급식시설 식중독 발생률	6. 어린이 급식시설 식중독 발생률	0.11
어린이 식생활 영양 (0.4)	식품 접근성 확보수준	7. 지자체 아동급식 지원율	0.07
	비만관리수준	8. 비만을(국가지표, 평가 제외)	0.06
	기호식품 영양 관리수준	9. 외식업소 영양성분표시 실시율	0.03
		10.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 건수와 건강친화기업 지 정수(국가지표, 평가 제외)	0.02
		11. 지자체의 영양교육 및 홍보 노력 정도	0.06
	식생활지도수준	12. 식생활지도 및 상담 정도	0.11
		13. 지자체별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여부	0.05
어린이 식생활 인지· 실천수준 (0.2)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인지수준	14. 고열량·저영양 식품 인지도	0.01
		15. 영양성분표시 인지 실천수준	0.03
	위생관리 인식 실천수준	16. 개인위생관리 인지 실천수준	0.04
		17. 올바른 식품구매 인지 실천수준	0.03
	영양균형 관리수준	18. 세끼식사 섭취수준	0.04
		19. 과일, 채소 및 흰우유 섭취수준	0.03
	20.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및 과자 섭취수준	0.02	

자료: 식약청 내부자료, 2010.

이에 식약청은 우리나라 식품안전을 평가할 수 있는 대표 안전지표를 구성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위탁주어 수행중에 있다.

평가지표는 평가목적에 맞게 구성, 산출하면 된다. 대표 안전지표를 개발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영향을 받는 분야를

평가지표 개발의 근거로 삼는다.

2. 개인의 선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평가지표 개발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3. 시의성 있으며,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갖는 평가지표를 개발한다.

4. 지역적 편차를 보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한다.

5.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지표는 가능한

- 계량화하는 등 정량평가를 지향한다.
- 6. 식품안전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 평가 지표여야 한다.
- 7. 타분야와도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평가지표여야 한다.

이 필요하다.

다. 시의성있는 안전지표를 유지, 생산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표의 관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기본방향 하에 현재 개발되어 검토중에 있는 안전지표(안)는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다.

2) 향후 추진과제

가. 2010년에 지방정부와 우리나라 전체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평가지표와 안전지표가 반드시 개발, 측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또한 안전지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안전지표 값을 생산하여 공포하고, 지표 값에 의한 실적을 평가하는 백서를 발간한다. 즉, 현재 식품안전업무의 99.9%가 지자체에 이관되어 수행되고 있어 지자체별 평가실적에 의한 취약점 분석과 개선을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

4. 나오며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중 식품안전과 관련된 과제도 총 16개 과제가 되며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이 완료, 진행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식품안전을 평가하기 위한 대표 안전지표 구성 및 관리 과제가 아직 진행중이다. 정상추진, 완료된 과제중에서 추가 노력이 필요한 식품위해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HACCP 확대 적용에 의한 식품이물혼입 저감화 및 지자체 식품안전관리업무 실적을 광범위하게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이런 정책적 제언이 향후 2년간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적극 추진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보건복지

표 11. 식품안전분야 대표 안전지표

평가영역 (4개)	평가지표 (5개)	산출 산식
1. 인프라	1-1. 국민 1인당 식품분야 세출액수	식품분야 집행예산 ÷ 전 국민수
	1-2. 식품분야 공무원 1인당 담당 국민수	전 국민수 ÷ 식품위생분야 공무원수
2. 정책집행	2-1. 10만명당 식중독 발생 환자수	(식중독 환자수×십만명) ÷ 전 국민수
3. 위해소통	3-1. 식중독 예방요령 인지도	(정답자수×100) ÷ 조사대상자수